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2월13일) 상정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2월13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개정이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2002. 1. 26)에 따라 관람료 면제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관람료 면제 대상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장애인·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로 조정함(안 제12조 제6호)
- 박물관중 쥘·폴생활사박물관을 삭제하고 유럽자기박물관을 신설 함에 따라 박물관 위치 및 관람료를 조정함(안 별표1 및 별표 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의결연월일	2002.12.24 (제101회)

제출년월일 : 2002. 12. 11. 상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2002. 1. 26)에 따라 관람료 면제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관람료 면제 대상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장애인·국가유공자, 광주 민주유공자로 조정함(안 제12조제6호)
- 박물관중 쥘·폴생활사박물관을 삭제하고 유럽자기박물관을 신설 함에 따라 박물관 위치 및 관람료를 조정함
(안 별표 1 및 별표 2)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박물관의 위치(제3조 관련)

박물관명	위 치	비 고
유럽자기박물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박물관 관람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박물관명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유럽자기 박 물 관	어 른	1,500	1,300	○ 단체요금 적용은 20인 이상으로 함 ○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 경찰, 경비교도대를 포함 한다)
	중·고생 군 인	1,000	700	
	초등학생 (6세~12세)	700	500	
	노인(65세이상) 장애인 유아(6세미만)	무 료	무 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관람료의 면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5. (생략) 6.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7. (생략)					제12조(관람료의 면제) ①----- ----- ----- 1.~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7. (현행과 같음)				
[별표 1] 박물관의 위치					[별표 1] 박물관의 위치				
박물관명	위치		비고		박물관명	위치		비고	
짚·풀생활사 박물관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 일원				유럽자기 박물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별표 2] 박물관 관람료 (단위 : 원)					[별표 2] 박물관 관람료 (단위 : 원)				
박물관명	구분	개인	단체	비고	박물관명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짚·풀생활사 박물관	어른	2,000	1,200	1.단체요금적용은20인이상으로함(다만,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단체인솔자가 있는경우에는20인) 2.군인은하사관이하의군인(단기사병,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유럽자기 박물관	어른	1,500	1,300	1.단체요금적용은20인이상으로함 2.군인은하사관이하의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중·고생 군인	1,000	600			중·고생 군인	1,000	700	
	4세~12세 어린이	500	300			초등학생 (6세~12세)	700	500	
	0~3세 어린이 노인(65세 이상)	무료	-	장애인·노인 (65세이상) 유아(6세가만)		무료	무료		